

☎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3-8702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 /의무팀장 이은혜(6540)/ 탐원 박주영(6542)/E-mail:juuuuuuuuuu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1-03679호

시행일자 2024. 6. 27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백일해 (의사)환자 진료 의료기관 대상 안내 협조 요청(질병관리청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-1720(2024.06.25.)

3. 질병관리청에서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‘백일해’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, 코로나 19 대유행이후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, 국내에서도 최근 유행한 '18년 연간 환자수(980명)를 넘어,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('24년 6.15. 기준 2,537명, 의사환자 포함) 불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 왔습니다.

* 최근 4주 신고 현황: (5.4주)210명 → (6.1주)415명 → (6.2주)481명 → **(6.3주)678명**

** 신고환자의 92.8%는 7~19세의 소아청소년에게 집중 발생

※ 백일해 관련 지침 및 발생 통계 등 자료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사이트(<https://dportal.kdca.go.kr/>) 및 「2024년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 지침」에서 확인 가능

4. 이에, 백일해 유행 대응과 관련하여 백일해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의 주요 안내사항을 전달 드리오니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의료기관 주요 안내사항>

- 백일해 (의사)환자 진료 시,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경우 5일 후까지는 활동 제한 및 자택 격리 시행을 설명하고, 특히 고위험군과 절대 접촉하지 않도록 교육 등 안내
- 검사 결과 백일해 양성인 환자의 동거인(보호자)이 환자와 동행 시, 동거인(보호자)에게 예방적 항생제 복용 권유

※ 붙임

1. 질병관리청 공문 1부.
2. 백일해 (의사)환자 진료 의료기관 대상 안내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를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